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 .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화 학 물 질 의 등 록 및 평 가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 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공포, 2025. 1. 1. 및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 등 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으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 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규정 (안 제3조 및 별표 1)
- 나.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유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7조)
- 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제11조, 제20조의2, 제27조 및 제31조)
- 라.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신설 및 제42조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개정에 따라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추가(안 제16조)

- 마. 법 제45조(자료의 보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개정(안 제30조)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용도 분류, 등록의 형태,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등의 공개 근거 마련
-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안 제31조)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 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장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일원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을 "(인체급성 등 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 제6호, 제2조제6호의2, 제2조제6호의3"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해성평가위원회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법 제2조제6호부터 제2조제6호의3까지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 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 성물질"이라 한다)
- 나. 법 제2조제7호부터 제2조제9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제1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ㆍ표시 자료의 검토 결과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10.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토 결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유해 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20조의2제1호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 서 다음 각 호의"를 "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가.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
 - 나.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
 -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라.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바.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 사.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 아.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료
 -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 라.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 마.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를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9호 중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를

"접수"로 한다.

별표 1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1. 인제급성유해성물실 구분	지정기준
	1)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5
	0밀리그램(50mg/kg) 이하인 화학물질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	2)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5
독성	0밀리그램(50mg/kg) 초과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
	kg) 이하인 화학물질
	1)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2
다. 전취르세 미참 그셔거피	00밀리그램(2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	2)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2
독성	00밀리그램(200mg/kg) 초과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
	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1)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50
	0피피엠(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2.0밀리그램(2.0mg
다. 사회론제 대취 그사중이	/L)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	2)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50
독성(기체나 증기)	0피피엠(500ppm) 초과 2,500피피엠(2,500ppm) 이하이
	거나 리터당 2.0밀리그램(2.0mg/L) 초과 리터당 10밀리그
	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1)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
가 서취로에 비취 그셔호이	터당 0.5밀리그램(0.5mg/L) 이하인 화학물질
라.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 독성(분진이나 미립자)	2)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
	터당 0.5밀리그램(0.5mg/L) 초과 리터당 1.0밀리그램(1.0
	mg/L) 이하인 화학물질
1 -14400 - 1-0	1)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
마. 피부부식성 및 자극성	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2) 피부에 3분 초과 1시간 이하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표피
	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3) 피부에 1시간 초과 4시간 이하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
	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1)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1회 노출에 의
	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바.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노출)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또
	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1회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되는 화학물질
	1) 가목1), 나목1), 다목1), 라목1) 또는 마목1)의 규정에 해
	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가목2), 나목2), 다목2) 또는 라목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 기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f. / Ef	3) 마목1)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5% 이
	상 함유한 혼합물
	4) 마목2), 마목3) 또는 바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
	해성물질을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구분	지정기준
가. 특정 표적장기독성(반	1)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복 노출)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

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또
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
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
정되는 화학물질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
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
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
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
성인 화학물질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
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
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1)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1)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10% 이상

2)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생태유해성물질

5. 경대표예정물설 기 H	기거기ス	
구분	지정기준	
가. 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1)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	
	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2)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	
	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초과 리터당 0.1밀리그램	
	(0.1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	
	터당 0.1밀리그램(0.1mg/L) 초과 리터당 1.0밀리그램(1.0	
	mg/L) 이하인 화학물질	
	1) 시험 물벼룩 수의 반에게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	
	(EC50, 48hr)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나.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	2) 시험 물벼룩 수의 반에게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	
	(EC50, 48hr)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초과 리	
	터당 0.1밀리그램(0.1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시험 물벼룩 수의 반에게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	
	(EC50, 48hr)가 리터당 0.1밀리그램(0.1mg/L) 초과 리터	
	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다. 조류에 대한 급성독성	1) 시험 조류의 생장률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농도(EC5	

	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2) 시험 조류의 생장률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농도(EC5
	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초과 리터당 0.1밀리그램(0.1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시험 조류의 생장률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농도(EC5
	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0.1밀리그램(0.1mg/L) 초과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1)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
	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
	001밀리그램(0.0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2)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
	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0
라.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	01밀리그램(0.0001mg/L) 초과 리터당 0.001밀리그램(0.001
에 대한 만성독성	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
	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
	01밀리그램(0.001mg/L) 초과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
	L) 이하인 화학물질
	1) 가목1), 나목1), 다목1) 또는 라목1)의 규정에 해당하는
마. 기타	생태유해성물질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가목2), 나목2), 다목2) 또는 라목2)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태유해성물질을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가목3), 나목3), 다목3) 또는 라목3)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태유해성물질을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고

1.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mg/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 m 또는 mg/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mg/L=(ppm×분자량/24.45)×1/1,000(상온, 상압)

- 2. 수생생태독성을 평가할 때에 대상 물질이 수계(水界)에서 쉽게 흡착되거나 분해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생태유 해성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 3. 어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어종(魚種)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 하여 고려한다.
- 4.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위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 5. 위 항목별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라도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 표를 삭제하다.

부 칙

이 영은 2025. 8. 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	제3조(인체급성 등 유해성물질의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	<u> 지정기준)</u>
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u>제2조제6호</u> 및 제20조에서 "대	제2조제6호, 제2조제6호의2, 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2조제6호의3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영) ①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	
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유해성평가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	②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	
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	
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	2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 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 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신 설>

<u>나</u>. · <u>다</u>. (생 략)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 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 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 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 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 다.

1. ~ 8. (생 략) <u><신 설></u>

가. 법 제2조제6호부터 제2조
제6호의3까지에 따른 인체
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
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
물질"이라 한다)
나. 법 제2조제7호부터 제2조
제9호까지에 따른 허가물
<u>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u>
<u>다</u> . • <u>라</u> . (현행 나목 및 다목
과 같음)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 설>

-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1. <u>법 제29조제1항제1호</u>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 었을 것
-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저 ①·② (생 략)

	화학물질 분류 • 표시	· 자료	.의
	검토 결과 유해성평	가가 필	요_
	하다고 인정하는 화학	학물질	
10	0. 법 제42조제3항 <u>년</u>	본문에	따
	른 검토 결과 같은 항		
	따른 유해성평가가		
	고 인정하는 화학물		
લી 20	0조의2(화학물질의		곳)
_			
_		-	-1) O
	. <u>법 제29조제1항제1</u> -		<u>साउ</u>
	<u><u></u> </u>		
2.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	<u>질,</u>
	제한물질 또는 금지	물질	
भी2'	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	등)
(1)・② (현행과 같음)		
3	3)		
_			
_			
ģ]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	질.
_	_ , _ , , ,	, , _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자료의 보호) ① (생 략)

<신 설>

-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 30조(자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
<u>는 자료를 말한다.</u> ②
<u>란</u>
다음 각 호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료
가.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
에 따른 용도분류
나.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
적 특성에 관한 자료
마.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
한 요약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 바.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 사.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아 이체 및 화경에 대하 무역
- <u>아.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무영</u> <u>향수준</u>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

 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

 한 자료
 - <u>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u> 도에 관한 자료
 -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 라.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 한 요약 자료
 - 마.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3.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삭 제>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 <삭 제> 응방법에 관한 자료 <삭 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삭 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삭 제> 요약 자료 8.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삭 제>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 탁) ① -----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 임한다. 1. ~ 3.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 <삭 제>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 정한다)의 접수

5. ~ 6. (생략)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 <삭 제> ·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 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 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 10. (생략)

② 화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 다.

1. ~ 9. (생략)

10. 법 제20조에 따른 <u>유독물질</u> | 10. ----- 인체등유 의 지정・고시

11. · 12. (생략)

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 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 고(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 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14. • 14의2. (생 략)

1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 | <삭 제> 고 · 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 · 검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5. ~ 6. (현행과 같음)

8. ~ 10.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해성물질---

11.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14.·14의2. (현행과 같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	
로 한정한다)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	③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u><삭 제></u>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	
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	
고로 한정한다)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6
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	
·검사 <u>등(지방환경관서의 장</u>	<u>5</u>
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8
<u>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u>	<u> 부과 · 징수</u>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	
<u>다)</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 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 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1. ~ 8. (생략)
-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 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 정한다)
- 10. ~ 16. (생략)
- ⑥ (생략)

⑤
1. ~ 8. (현행과 같음)
9
<u>접수</u>
10. ~ 16. (현행과 같음)
⑥ (혂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2) \ 201 - 6784$